#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395

발의연월일: 2021. 11. 18.

발 의 자:김미애·박대수·박덕흠

김기현 • 전주혜 • 김용판

김상훈 • 이종성 • 추경호

조명희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2021년 4월 20일 제정되었음.

그런데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스토킹범죄의 피해자, 신고 인에 대한 보호 및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 구체적인 법률조력 내용이 없어 특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,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가.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스토킹범죄의 피해자,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「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」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(안 제17조의2 신설). 나.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, 변호사는 조사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, 관계서 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음. 또한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7조의3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장에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피해자,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)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스토킹범죄의 피해자, 스토킹범죄를 신고(고소·고발을 포함한다)한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「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」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경우 「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」 제9조 및 제13조를 제외하고는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.

- 제17조의3(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) ① 스토킹범죄의 피해 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다만,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, 증거 보전절차,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

있다.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-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,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.
-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변호사 선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스토킹범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&lt;신 설&gt;</u>	제17조의2(피해자, 신고인 등에
	대한 보호조치) 법원 또는 수
	사기관이 스토킹범죄의 피해자,
	스토킹범죄를 신고(고소·고발
	을 포함한다)한 사람을 증인으
	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
	에는 「특정범죄신고자 등 보
	호법」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
	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	이 경우 「특정범죄신고자 등
	보호법」 제9조 및 제13조를
	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
	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.
<u>&lt;신 설&gt;</u>	제17조의3(피해자에 대한 변호사
	선임의 특례) ① 스토킹범죄의
	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
	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
	방지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
	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
	<u>수 있다.</u>
	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
	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
	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

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있다. 다만,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 문, 증거보전절차,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이 경우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 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,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 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 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그 법정 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 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 적인 대리권을 가진다.
-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 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 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.